

|          |     |
|----------|-----|
| 의안<br>번호 | 358 |
|----------|-----|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안)

#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1

전문위원 강 영 숙

###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358호

다. 제출일자 : 2024. 11. 07.

라. 회부일자 : 2024. 11. 15.

### 2. 제안이유

- 2022. 9. 7. 개관 후 2년간 성북구 직영 여성직업능력 교육기관으로 운영해 온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를 직업 교육의 전문성 향상과 취·창업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 위 치 : 성북구 회기로3길 17
- 규 모 : 지하1층~지상1층 827.75m<sup>2</sup>

(강의실, 요리교실, 컴퓨터실, 사무실, 휴게공간 등)

나.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다. 위탁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라. 위탁사무의 범위 :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관리·운영

-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시설 관리
-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취·창업 교육, 취업 연계, 창업지원 등
- 기타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5. 검토의견

### □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2022. 9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한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는 성북구 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2022년 7월 개관하여 직영으로 운영한 시설로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으로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 교육프로그램 수강 및 자격증 취득 후 취·창업으로 연계하고 사후관리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의 역량이 현장에서 요구됨

#### <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시설 및 사업개요 >

##### ○ 시설현황

|      |                    |                      |                    |
|------|--------------------|----------------------|--------------------|
| 구 분  |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                      |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
| 위 치  | 성북구 회기로 3길 17(중암동) |                      |                    |
| 면 적  | 827.75㎡(약 250평)    |                      | 1,170.09㎡(2~4층/옥상) |
|      | 329.68㎡(지하1층)      | 498.07㎡(지상1층)        |                    |
| 공간구성 | 강의실 2개, 서재, 휴게실    | 요리교실, 컴퓨터실, 사무실, 라운지 |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

- 운영방식 : 직영, 현장인력 2명(프로그램운영, 홍보전담 기간제근로자)

##### ○ 운영실적

(2024.10..31.현재)

| 구 분       | 합계  | 특강시리즈 | 정기강좌<br>자격증/취업&창업/조리 | 협약기관 프로그램<br>(정릉새일센터) |
|-----------|-----|-------|----------------------|-----------------------|
| 프로그램 수(개) | 55  | 4     | 47                   | 4                     |
| 참여자 수(명)  | 956 | 148   | 522                  | 286                   |
| 자격증 취득(명) | 236 | 0     | 218                  | 18                    |
| 취업(명)     | 97  | 0     | 23                   | 74                    |

- 2024 예산 : 226,057천원(전액 구비)

## □ 주요내용

-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는 기존 직영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 민간위탁의 적정성

-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9조제1항1)에 “구청장은 필요시 시설의 관리,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대상에 해당되어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2)에 따르면 구청장의 소관 사무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북구 여성들의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취·창업 교육, 취업 연계, 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전문성이 필요하여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관리, 운영을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위탁 관리시에는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위탁 기간은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3)에 따라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관해서는 같은 조례 제 7조제1항 및 제2항4)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적격심사를 추진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바,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

---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계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